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제정 2023. 03. 24

개정 2023. 06. 16

개정 2025. 02. 27

개정 2025. 03. 1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케이프리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조 (주관부서) 이 기준과 관련된 업무의 주관부서는 투자운용팀으로 한다.

수제 2 장 행사기준

제4조 (행사의 원칙)

-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행사방향)

-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수익자 또는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 ② 제1항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사는 내부적으로 별도로 다르게 정함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2023.10.25. 개정)을 참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포함). 단,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개정절차 없이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른다.

제6조(이해상충방지)

회사는 의결권 행사 시 소유지배관계나 거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조직 및 절차를 운영한다.

1. 모든 의결권 행사는 이 지침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결권 행사 주관부서 임직원은 회사 및 계열사의 거래·계약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의결권 행사 주관부서 임직원은 정보차단벽을 통해 경영지원팀 및 타 팀과 분리한다.
4. 회사의 임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인지하거나 실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준법감시인 등과 논의한다.
5. 각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불통일행사)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6.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중립적 투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중립적 투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의결사항으로서 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가)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영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 나) 관계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다)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 나)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다)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행사금지)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 제81조 제1항, 제2항 및 제8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회사 정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회사의 주식
3. 제6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의 주식

제9조 (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행사방법

제10조 (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불통일 행사)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탁자로서 수익자의 이익 증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충실한 검토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나, 예외적으로 각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는 것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4 장 행사절차

제13조 (주주총회 개최파악)

-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결정)

-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책임운용역이 주가 되어 투자운용담당팀이 함께 결정한다.
- ② 투자운용팀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안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투자운용팀은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 ④ 투자심의위원회는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기관 또는 협회가 정한 의결권 행사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 ① 투자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주주총회 안건에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기업과 주주총회 안건의 적정성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자 노력한다.

제 5 장 공시 등

제16조 (공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영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7조 (기록 유지)

- ①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이 지침의 주요내용을 법 제123조의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18조 (해외 의결권 행사) 회사는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감사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의결권행사 세부 기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이라 함)”에 따라 당사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개별적인 안건의 예를 들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의위원회

- ① 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또는 이사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는 안건별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결정은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2 장 주주총회

제3조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요건

주주총회의 소집, 일시 및 장소의 변경, 주주권 행사 요건의 변경, 의결 주체의 변경 등에 관하여,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제4조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

- ①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할 수 있다.
-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제5조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건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건에 반대한다.

제6조 의결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반대한다.

제7조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5영업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정관의 변경

제8조 회사명의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제9조 회계연도의 변경

잘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제10조 기타 정관의 변경

목적사업 추가 등의 안건은 중장기 회사가치 또는 주주 권리 침해 요소 등을 고려하여 안건별로 판단, 결정한다.

제11조 다수의 정관변경

한 개의 안건으로 다수의 정관변경 내용이 상정되고 이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제12조 집중투표제

- ①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건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에는 찬성한다.
- ②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의결권의 행사

제13조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건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제14조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권의 행사가 용이하게 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건에 반대한다.

제15조 비금융주력자 보유현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시, 지침 및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건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회사가 보유한 주식 수 중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현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이사

제16조 이사회 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건에 반대한다.

제17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 ① 이 기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이사회 기능 및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에 반대한다.
- ② 이 기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인원과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 ③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제18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에 반대한다.
- ② 독립적인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4.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5. 당해기업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6. 당해기업의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 침해에 현저한 책임이 있거나, 향후 이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
 7. 당해기업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지침에 따른 회사의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해,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자
- ③ 성별, 사회·문화적 배경, 경력, 전문분야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 ④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건에 찬성한다.
- ⑤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 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 ⑥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사외이사의 선임

- 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건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건에 반대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건에 반대한다.
- ③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단, 합작투자 관계상, 주요주주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판단)
 2. 당해기업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임직원이거나 그의 직계 존비속 또는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이었거나 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3. 당해기업이나 그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중요한 지분 거래에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4.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런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3년 이내 특수관계인
 5.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6.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당해기업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6년을 초과하는 자
 7. 그 밖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당해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8.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자문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
- ④ 다음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1. 전문경영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금융투자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상기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제20조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건에 반대한다.
- ②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제안에 찬성한다.
- ③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제21조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 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

이사 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늘리는 안건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건에 반대한다.

제 6 장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24조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 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18. 이사의 선임」 및 「19.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다만,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의 경우에는 기준 19-③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1. 법령상 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기업공개(IPO), 도산, 구조조정, 세무 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 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용역 보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감사 직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단 필요시 사업 특성 등에 대한 고려)

3.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③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건에 반대한다.

제25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제 7 장 보상

제26조 임원 및 감사의 보수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건에 반대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건에 반대한다.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건에 찬성한다.

제27조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건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 ②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특히, 적자 또는 순이익 감소 기업의 인당 및 총 보수한도의 증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③ 다만, 개별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안건별로 검토한다.
- ④ 보수한도, 내역 및 체계 등의 임원별 공시를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제28조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이사회가 제시한 안건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보수한도 수준이 감사가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할 유인을 훼손시킬 만큼 과소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제29조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 ①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건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 ②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황금낙하산 계약 :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체의 인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계약

제30조 경영진에 대한 성과 보상

- ①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경영진의 성과 평가에 재무적 업적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고려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 ②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 성과급 지급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③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현금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 ④ 경영진에 대한 성과연동보상 중 6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이연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

- ⑤ 임직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

제31조 주식 연계 보상

- ① 경영 성과 제고,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며, 특히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1.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매수선택권의 규모가 과도한 경우 (발행 주식의 3% 이상)
 2. 희석률이 과도한 경우 (10% 이상 희석되는 경우)
 3. 주주 동의 없이 행사가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도록 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건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제32조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건에 반대한다.

제33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① 임직원에게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건에 반대한다.
- ④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 ⑤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부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찬성한다. 1.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의 제시 2. 매도 제한 기간의 적절한 설정 3. 합리적인 부여 방법 및 지급 기준의 제시 4.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 보상 규모의 적절한 설정

제 8 장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의 처분

제34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제35조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① 회사의 적정 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 ② 다만, 당사를 비롯한 각 주주의 주주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및 계획, 자사주 매입 규모,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동종업계의 배당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 ③ 중장기 회사의 성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간 또는 반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④ 현금배당 이외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 배당으로 지급할 현물의 시장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⑤ 주주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배당을 회사 성과 및 재무상황과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제 9 장 자본 구조

제36조 주식의 발행

- ① 정관상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건에 대해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합리적인 경우에 찬성한다.
1.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한 증자

2. 경영상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증거
 3. 기타 증가의 목적이 명확하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발행 목적, 규모,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찬성한다.

제37조 종류 주식

- ①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 ②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의 과도한 권리 희석, 정당한 M&A를 부당하게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③ 회사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기하거나, 악의적인 적대적 M&A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제38조 자기 주식

자기주식 취득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찬성한다.

제39조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당사가 동의한 경우
4.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5.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제40조 주식의 분할 및 병합

- ①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
- 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41조 주식연계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회사 가치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발행 목적의 합리성, 발행 규모,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안건별로 판단한다.

제42조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 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안건별로 투표한다.

제43조 증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안건별로 투표한다.

제44조 주식의 제3자 배정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 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제45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안건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제 10 장 주주의 권리

46.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제 11 장 기타

제47조 M&A, 영업 양수도, 회사의 분할 및 분할 합병

안건별로 검토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회사 및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1. 인수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의 대금 또는 비율 적정성
2. 절차 및 정보 공개의 적정성
3. 사업의 전망과 향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4.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제48조 영업양수도 등

- ① 안건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
- 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건에 반대한다.
- ④

제49조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 ① 안건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

제50조 적대적 인수 합병 및 위임장 대결

장기적 측면에서 회사 및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건별로 검토하되, 종업원, 서플라이 체인상의 유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1조 합병 및 인수

- ① 안전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

제52조 환경, 사회적 이슈

- ① 안전별로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되, 환경, 사회적 요소의 관리가 당해기업의 명성 뿐 아니라 중장기 기업의 운영, 관련 비용 등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을 충분히 고려한다.
- ② 환경,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법규, 규정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관련 리스크의 방지, 제거 등을 위한 안전 또는 이에 대한 공시 강화 안전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제53조 주주제안

- ①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 ② 주주제안은 안전별로 판단하되 주주제안의 취지, 중대한 리스크의 유무, 회사의 공개 또는 대응 수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③ 이사회 안전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전에 찬성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